

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

(제정 2008. 2. 29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학교육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의 수요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 및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2.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3.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득 및 지속적인 운영
4.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생의 현장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5. 그 밖에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센터장은 필요시 교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센터 사업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지원 및 협조를 받는다.

⑤ 센터에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행정지원)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 업무는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수행한다.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위원회)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, 연구방향, 예·결산 및 사업계획, 그 밖의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10.3>

1. 공학교육산학위원회
2. 공학교육혁신추진위원회
3.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

제6조(기능)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.

1. 공학교육산학위원회: 공학교육 혁신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및 추진에 관한 사항,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,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,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2.10.3>
2. 공학교육혁신추진위원회: 교수평가 및 보상제도 개선, 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, 졸업생 및 기업체 만족도 평가, 산업체 수요조사 및 반영 등 공학교육 성과의 관리와 개선에 관련된 사항,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2.10.3>
3.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: 공학교육인증제를 비롯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도록 하며, 공학교육 방향과 공학 교과과정 개편,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, 사업성과 홍보,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,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7조(구성) ① 센터장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며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공학교육산학위원회 : 산업계 인사, 학계 인사, 관계 또는 관계에서 추천하는 인사와, 센터장이 임명하는 공과대학 교수 중 약간 명을 위원으로 한다.
2. 공학교육혁신추진위원회 : 본교 공과대학 소속 교수 중 공학교육혁신에 기여하는 교수 약간 명을 센터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2.10.3>
3.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 :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각 전공의 프로그램 책임자(PD) 및 센터장이 임명하는 공과대학 교수 중 약간 명,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, 학사지원실장 및 업무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12.1.>

② 각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센터 담당 직원이 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정 및 결산

제9조(재정) 센터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예·결산) 센터의 예·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 다만,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3. (규정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학교육지원센터규정은 폐지한다.
4. 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